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비상근무수당과 타 특수업무수당간 병급 허용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
비상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

3. 주요내용

가. 특수업무수당간 병급 금지 예외 조항으로 비상근무수당 추가

나. 국가직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비상근무수당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7. 17.~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7.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 바목(특수직무수당) 21)의 수당

⑨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·위험근무수당·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표11의 제3호 바목(특수직무수당) 21)의 수당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수당등의 지급방법) ①·②(생략)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(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,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. 1. ~ 16. (생략) <u><신설></u> ④ ~ ⑧ (생략) ⑨ <u>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·위험근무수당·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 ⑩ ~ ⑬ (생략)	제19조(수당등의 지급방법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<u>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 바목(특수직무수당) 21)의 수당</u> ④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<u>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·위험근무수당·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표11의 제3호 바목(특수직무수당) 21)의 수당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 ⑩ ~ ⑬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01